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0065/02-6955-1004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 KODEX 일본TOPIX10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형)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23.01.01 - 2023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주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미래에셋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SK증권, DB금융투자, 제이피모간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| 변경 일자 | 변경사유 | 주요 변경내용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변경전 | 변경후 |
| 2023. 01.12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2조(설정단위) |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200,000좌로 한다 |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,000좌로 한다 |
| 2023. 07.07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2조(설정단위) |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,000좌로 한다 |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20,000좌로 한다 |
| 2023. 07.21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38조(투자신탁 보수) | 1.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2.5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5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| 운용보수율: 연 1,000분의 1.69 2. 지정참가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01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 |
| 2023. 12.13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34조(투자대상 등) | (신 설) | 2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”이라 한다) |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을 통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| 변경 일자 | 변경 사유 | 성명 | 협회등록번호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2023. 08.31 | 말소 | 정재훈 | 2121000625 |
| | 신규 | 김천홍 | 2114000352 |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s://dis.kofia.or.kr/> 을 통해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·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
 - 일치함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·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사항 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